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8. 27.(일) 11:00,  
(지면) 2023. 8. 28.(월) 조간

배포 2023. 8. 25.(금) 오후

#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, 필기 11월 25일,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

-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'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'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(원장 김민중)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(<http://lems.seaman.or.kr>)에 공고하였다.

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, 디지털·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·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, 1~3급으로 나뉜다.

그간 「해사안전법」에 따라 선박\*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(책임)자로 선임해야 했는데,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(책임)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.

\* 국제항해 여객선,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,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

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일(화)부터 9일(목)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, 필기시험은 11월 25일(토) 한국해양수산연수원(부산 영도구) 및 인하공업전문대학(인천 미추홀구)에서, 면접시험은 12월 2일(토)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,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.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(051-620-5831~4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최성용 (044-200-5810)
<총괄>	해사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윤광상 (044-200-5818)
<시험운영>	한국해양수산연수원	책임자	팀 장	박영숙 (051-620-5830)
	능력평가팀	담당자	교 수	김종관 (051-620-5794)

## □ 추진배경

- 선박의 대형화·첨단화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'선박안전관리사\*' 자격제도 신설(「해사안전법」 제5장제3절 신설)
  - \* △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, △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, △해양사고 예방 지도·조언 등 수행
-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'24.1.5.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선임\*필요
  - \* '24.1.5.기준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
  - ※ '24.1.5.기준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별도 교육·평가 ('24~'26년 시행예정)를 통해 자격취득 가능(「해사안전법(법률 제18702호)」 부칙 제4조)

## □ 시험개요

- (위탁·시행기관) 한국해양수산연수원(문의 : 051-620-5831~4)
- (시험주기) 1년마다 1회 실시 원칙(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가능)
- (자격등급) 1·2·3급\*
  - \*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
- (시험방법) 1차(필기시험\*), 2차(면접시험, 1·2급만 해당) 실시
  - \* 1급은 객관식·주관식, 2~3급은 객관식
- (시험과목) △선박관계법규, △해사안전관리론, △해사안전경영론, △선박자원관리론, △선택과목\*(항해, 기관, 산업안전관리 중 택1)
  - \* (면제대상) 3급 이상 항해사·기관사 면허,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
- (합격기준)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△필기 :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△면접 : 60점 이상

## □ 향후계획

- 원서접수(11.7~9,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) → 필기(11.25, 부산·인천) → 면접(12.2, 부산) → 합격발표(12.4)